



가짜뉴스/온라인허위정보

배경

- 가짜뉴스는 새로운 것이 아님.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짜 뉴스/정보처럼 확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 커짐
- 허위조작정보는 다양한 주체(국가/非국가, 이윤추구집단, 미디어, 시민)들에 의해 생산됨. 과거보다 더 큰 스케일로 생산, 유통, 확대되고 있음
-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, 변화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

가짜뉴스 용어의 문제점

- ▶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함
- ▶ 정치적 공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짜뉴스라고 칭함
- ▶ 진짜/가짜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통해 진실을 오도함
- ▶ 유럽연합(EU)과 여러 유럽국가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(disinformation)/오정보(misinformation)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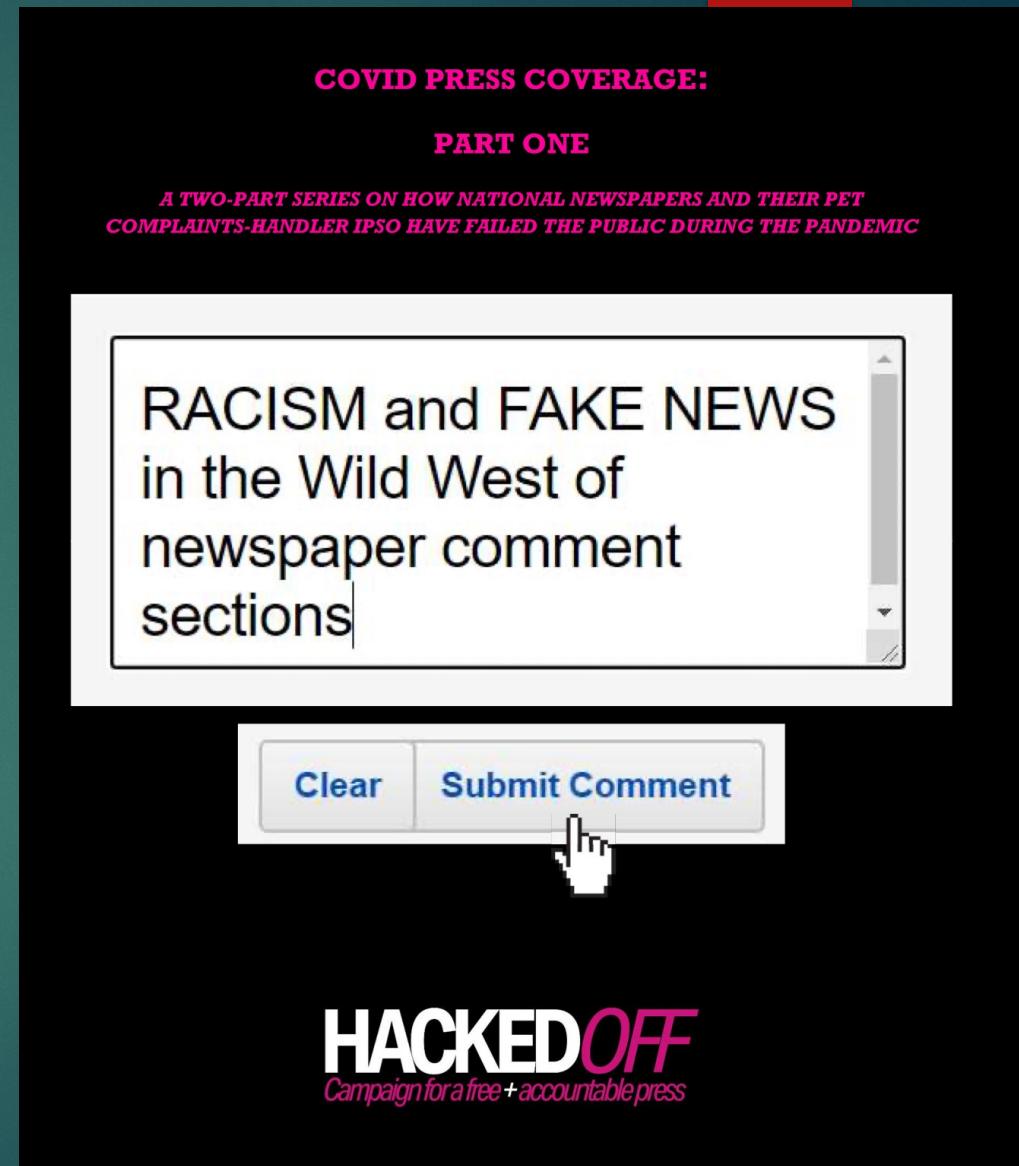


허위정보 확산의 요인

- 기성 언론의 신뢰도 하락, 필터버블, 확증편향, 미디어 알고리즘 발달,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
- 신뢰할만한 미디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, 디지털 알고리즘이 이러한 환경을 조장함
- LSE Prof. Tambini: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들의 기호를 수집한 뒤 메시지를 선별하여 전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
-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정치적 이익, 영리를 얻기 위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혐오범죄(hate crime)를 부추김

댓글과 허위정보의 확산

- ▶ 영국의 시민운동단체 Hacked Off : 'Racism and Fake News in the Wild West of Newspaper Comment Sections' 보고서 2020년 7월 발표
- ▶ 뉴스 댓글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적절한 관리를 촉구함



허위정보의 해악

-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위협이 됨
 -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적인 정치 프로세스(선거의 완전성 포함)에 대한 위협, 보건·과학·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위협을 초래
 - 시민들이 많은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될수록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어려움 발생. 민주주의 사회는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(informed citizens)간의 공적 논의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. 시민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social glue로 작용
 - 허위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상에서의 편향적 정보 습득과 맞물리면서 민주주의의 작동, 건전한 여론 형성, 질 높은 공중 담론 도출에 걸림돌이 됨

허위정보 대응 노력(해외)

- ▶ 미국: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방식. 딥페이크 동영상에 대해서는 일부 주에서 규제법 마련
- ▶ 영국: 온라인 유해 콘텐츠 법안 준비중. 오프콤(Ofcom)이 이용자 안전의무 수행하지 못한 인터넷사업자에게 벌금 부과 권한 갖게 될 예정
- ▶ 독일: 네트워크집행법(2017) 근거로 형법상 22개 조문에서 명시한 위법 콘텐츠(테러, 범죄선동, 범죄단체 조직, 음란, 모욕 등) 유포 처벌
- ▶ 프랑스: 정보조작대처법(2018) 근거로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

허위정보 대응노력(한국)

- 정보통신망법: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, 사생활침해 당한 경우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요청 가능(제44조의2). 사업자는 임시조치 또는 삭제·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해당할 경우 방침위에서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가능(제44조의7)
- 자율규제: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에서 가짜뉴스관련 자율규제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고센터 운영
- 미디어교육: 이용자의 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실시
- 법안 발의: 가짜뉴스 개념 정의의 문제, 규제 대상의 문제, 규제 실효성의 문제

법안 속의 다양한 가짜뉴스 정의

- ▶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
- ▶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및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
- ▶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
- ▶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

허위조작정보란

- ▶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/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/유포된 모든 정보
- ▶ 패러디/풍자 제외(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)

허위 처벌의 어려움

- ▶ 허위의 사실로 판명됐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도 아님 -- 진실오신 상당성의 법리: 공익을 위해 표현한 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
- ▶ 허위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이유: 표현 당시 진위 불분명하지만 추후 판명되는 경우가 많음. 때로는 끝까지 진위를 밝혀낼 수 없기도. 확실한 진실만을 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

미네르바 사건과 허위 처벌

- ▶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(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).
- ▶ 헌법재판소(2010): 명확성 원칙 위배되어 당해 조항 위헌 결정. “허위 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범죄의 선동,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.”

유럽집행위(EC) 전문가그룹의 제안

-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안전장치 마련 필요
 -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다면적이며 광범위한 행위자들의 영향 받으므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허위정보 확산에 맞서야 할 책임 있음
-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 필요
 - 표현의 자유와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유념
 - 거짓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및 메시지를 접근차단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됨
- 정보/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
 - 자율규제일지라도 플랫폼사업자가 시민의 의견 개진을 막는 사적 검열이 되어서는 안됨.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

- 이해관계자 간 협력 필요
 -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때에만 효과적 해결 가능
-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는 다면적이며 변화하므로 하나의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음
 -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장기적인 대책 필요
-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
 - 장기적 종합적 관점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필요
- 대응방안에 대한 정기적 검토
 - 다양한 대응책들의 시행이 효율적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